

# 컨테이너보수점검에관한기준

제정 1993. 7. 2. 해운항만청고시 제1993-31호  
개정 1998. 6. 13. 해양수산부고시 제1998-37호  
1999. 10. 28. 해양수산부고시 제1999-87호

**제1조 【목적】** 이기준은 안전한컨테이너를위한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부속서 I 제2규칙에 의한 컨테이너의 점검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10.28.>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기점검”이라 함은 안전승인판이 부착된 컨테이너에 대하여 컨테이너 소유자가 지방해양수산청장(컨테이너운송선박의 주된 기항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승인 받은 정기점검방법에 따라 협약 부속서 I 제2규칙 제2항에 규정된 점검년월에 행하는 보수점검을 말한다.<개정 98.6.13.><개정 99.10.28.>
2. “계속점검”이라 함은 안전승인판이 부착된 컨테이너에 대하여 컨테이너 소유자가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부터 승인받은 계속점검방법에 따라 협약 부속서 I 제2규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보수점검을 말한다.<개정 98.6.13.><개정 99.10.28.>
3. “데칼”이라 함은 전사, 접착테이프 또는 금속판의 식각등의 방법으로 컨테이너에 표시하는 방법을 총칭한다.

**제3조 【적용】** ①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정기점검방법 또는 계속점검방법에 의하여 점검을 하여야 한다.<개정 98.6.13.>

②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협약 부속서 I 제2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정기점검방법 또는 계속점검방법으로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98.6.13.><개정 99.10.28.>

**제4조 【점검방법승인등】** 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컨테이너정기점검방법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컨테이너정기점검방법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6.13.>

1. 컨테이너의 종류별, 규격별 보유현황
2. 다음에 계기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각 2부
  - 가. 정기점검계획(조직, 실시요령을 포함)
  - 나. 정기점검기준(점검항목 및 판정기준)
  - 다. 정기점검기록, 정기점검에 필요한 컨테이너의 구조, 강도등에 관한 서류의 관리방법
3.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에 계기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유자의 사업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개정 98.6.13>
  - 가. 회사의 연혁, 조직 및 업무분장 등 회사의 개요를 설명하는 서류
  - 나. 정기점검을 타회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회사(이하 "수탁회사"라 한다)와의 계약내용 및 수탁회사의 연혁, 조직 및 업무분장 등 회사의 개요를 설명하는 서류
  - 다. 기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98.6.13>

②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컨테이너계속점검방법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컨테이너계속점검방법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6.13.>

1. 컨테이너의 종류별, 규격별 보유현황
2. 다음에 계기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각 2부
  - 가. 계속점검계획(조직, 실시요령을 포함)
  - 나. 계속점검기준(점검항목 및 판정기준)
  - 다. 계속점검기록, 계속점검에 필요한 컨테이너의 구조, 강도등에 관한 서류의 관리방법
3.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에 계기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유자의 사업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개정 98.6.13.>
  - 가. 회사의 연혁, 조직 및 업무분장 등 회사의 개요를 설명하는 서류
  - 나. 계속점검을 타회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회사와의 계약내용 및 수탁회사의 연혁, 조직 및 업무분장 등 회사의 개요를 설명하는 서류
  - 다. 계속점검계획에 준하는 보수점검계획에 의한 컨테이너 보수점검실적
  - 라. 기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개정 98.6.13.>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정기점검방법 또는 계속점검방법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컨테이너정기(계속)점검방법승인서에 제1항 제2호 또는 제2항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부한다.<개정 98.6.13.>

**제5조 【심사기준】** ① 컨테이너의 정기점검방법의 승인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

의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1. 정기점검 및 임시점검을 하기 위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을 것.
2. 정기점검의 간격은 협약 부속서 I 제2규칙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을 행한 경우 안전승인판의 위 또는 그 부근의 보기쉬운 장소에 차기 점검년월을 다음에 계기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개정 99.10.28.>
  - 가. 차기 점검년월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문자 또는 숫자로 표시할 것.
  - 나. 데칼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차기 점검년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색으로 구별하여 표시할 것.

색	차기	점검	연도
갈 색		1998	2004
청 색	1993	1999	2005
황 색	1994	2000	
적 색	1995	2001	
흑 색	1996	2002	
녹 색	1997	2003	

3. 정기점검을 행하기 위한 조직 및 책임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정기점검은 점검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여 컨테이너의 구조·강도상 안전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점검을 행할 것.
5. 점검자는 제8조의 규정에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그 권한 및 책임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되어 있을 것.
6. 점검자는 컨테이너를 점검한 결과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을 것.
7. 정기점검 사이에 ROOF RAIL, BOTTOM SIDE RAIL, CORNER POST, END RILL 등의 수리, 교체 등 대수리를 행한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임시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것.
8. 점검항목 및 판정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결함, 기타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손상에 대한 외관검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9. 점검기록, 점검에 필요한 구조·강도 등에 관한 서류는 컨테이너 담당부서에서 다음 계기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보관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것.
  - 가. 전회 및 전전회 점검의 실시에 관한 기록이 적절히 보관되고 또한 임시점검의 실시에 관한 기록은 적어도 차회의 정기점검시까지 보관될 것.
  - 나. 정기점검기록은 점검결과 이외에 최소한 컨테이너의 일련번호, 검사일자 및

점검자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작성될 것.

다. 점검에 필요한 구조·강도등에 관한 서류 및 기타의 자료를 관리하는 제도를 갖출 것.

② 컨테이너의 계속점검방법의 승인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1. 컨테이너의 일상점검(외부 및 하부에 대한 외관점검)이 컨테이너 터미널게이트에서 실시하는 점검등에 의하여 일상적으로 행하여 질 것.
2. 컨테이너의 수리, 재생 또는 임대변경시에 컨테이너 전체(외관 및 내부)에 대하여 정밀점검이 행하여 질것.
3. 개별 컨테이너별로 정밀점검 실시현황을 항상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정밀점검의 간격은 30월을 넘지 아니할 것.
4. 제3호에 규정된 기간내에 수리, 재생 또는 임대변경이 없는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정밀점검을 행하기 위한 조치가 규정되어 있을 것.
5. 계속점검을 행하기 위한 충분한 조직 및 책임체제를 갖고 있을 것.
6. 점검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가 있어야 하며 컨테이너의 구조·강도상 안전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결함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 및 경험이 있는 자가 점검을 행하도록 할 것.
7. 점검자는 제8조의 규정에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그 권한 및 책임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될 것.
8. 점검자는 컨테이너를 점검한 결과 세밀한 점검이 필요로 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을 것.
9. 일상점검 및 정밀점검과 관련한 점검항목 및 판정기준은 별표 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결함·기타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손상에 대한 외관검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10. 컨테이너 관리부서에는 점검기록, 점검에 필요한 컨테이너의 구조·강도등에 관한 서류가 다음에 제기하는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유지될 수 있을 것.
  - 가. 점검에 필요한 구조·강도등에 관한 서류 및 기타의 자료를 관리·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점검 실시부서에 관련자료를 송부할 수 있을 것.
  - 나. 개별 컨테이너별로 정밀점검 실시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11. 컨테이너 소유자의 점검 실시부서(또는 수탁업체)에서는 점검기록을 다음에 제기하는 방법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 유지할 것.
  - 가. 적어도 전회의 정밀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이 기록 보존되어 있을 것. 다만, 일상점검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점검기록은 점검결과외에 최소한 컨테이너의 일련번호, 점검일자 및 점검자

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작성될 것.

다. 개별 컨테이너별로 점검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하는 체계를 갖출 것.

12. 계속점검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별표 1의 표시를 안전 승인판의 위 또는 그 부근의 보기쉬운 장소에 데칼로 표시할 것.

**제6조 및 제7조 삭제**〈99.10.28.〉

**제8조 【점검자의 자격요건】** 컨테이너의 정기점검 또는 계속점검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가 행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조선, 항해, 기계, 기관, 용접, 금속재료등에 관한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를 졸업하고 컨테이너 제조 또는 검사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6월이상 종사한 자.
2. 대학의 관련학과 이외의 이공계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관련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업계고등학교의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관련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4.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학력을 가진자로서 관련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제9조 【감독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컨테이너의 정기점검방법 또는 계속점검방법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관한 매년의 현황 및 실적을 다음해 1월 15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6.13.〉

1. 컨테이너 종류별, 규격별 보유현황
2. 연간 컨테이너 보수점검실적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정기점검방법 또는 계속점검방법의 승인을 받은자에 대하여 이 기준에 의한 컨테이너 보수점검에 관한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컨테이너 보수점검등에 관한 관계서류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컨테이너 소유자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충실히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98.6.13.〉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승인된 점검방법의 내용을 개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98.6.13.〉

**제10조 내지 제12조 삭제**〈99.10.28.〉

##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컨테이너의 보수관리기준에 따라 보수점검

컨테이너보수점검에관한기준

을 시행중인 컨테이너 소유자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기준에 따라 컨테이너보수점검방법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98.6.1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0.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98.6.13.>

컨테이너정기(계속)점검방법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명칭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	명 칭			
	소재지			
승인을 받고자 하는 컨테이너의 종류·규격				
비고				
컨테이너보수점검에관한기준 제4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컨테이너정기 (계속)점검방법의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컨테이너보수점검에관한기준 제4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54337-20511 민  
1993. 6. 21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sup>2</sup>

[별지 제2호서식]<개정 98.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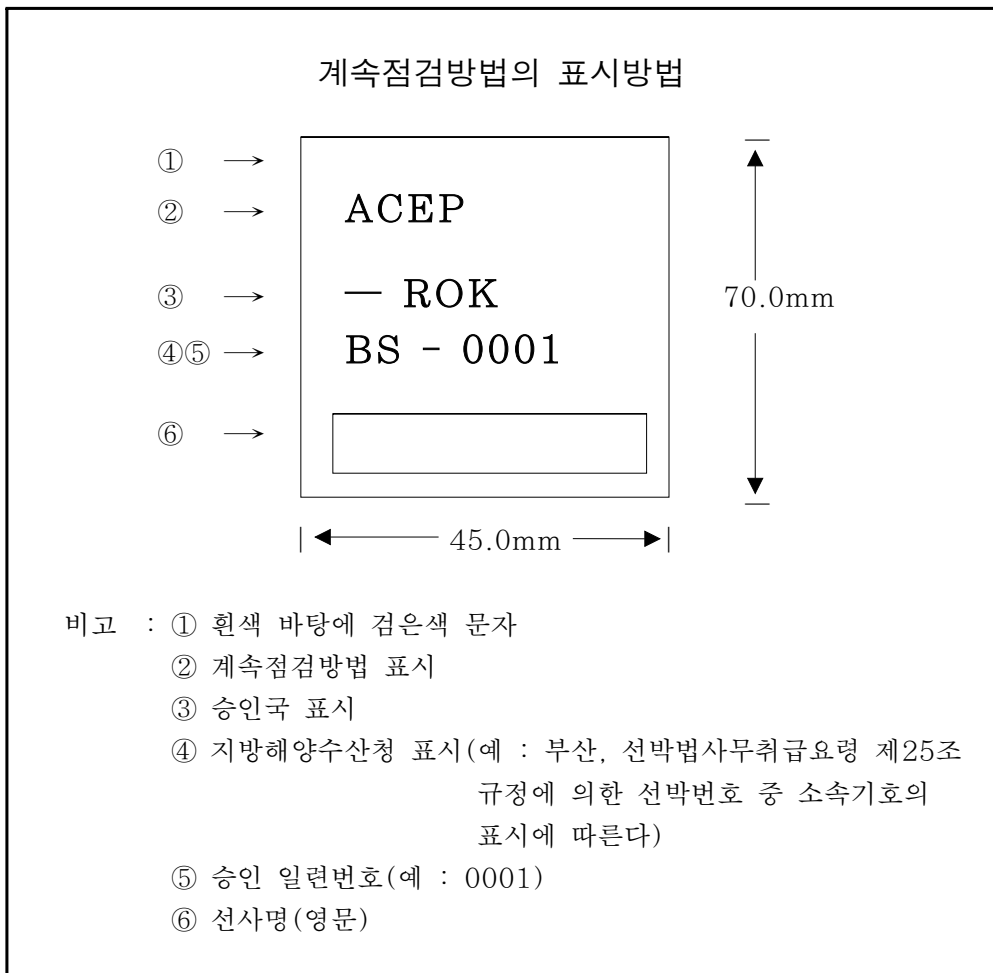
제 호 컨테이너정기(계속)점검방법 승인서				
신청인	명칭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승인을 받은 사업장	명 칭			
	소재지			
승인을 받은 컨테이너의 종류 및 수				
컨테이너보수점검에관한기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컨테이너정기(계속) 점검방법 승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 과 전화번호 ) 첨부 : 컨테이너보수점검에관한기준 제4조제1항(제2항)제2호의 서류				

54337-20611 민  
1993. 6. 21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120g/m<sup>2</sup>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 삭제(99.10.28.)

[별표 1] <개정 98.6.13.>





[별표 2]

컨테이너보수점검 항목 및 판정기준

순번	점 검 항 목	판 정 기 준
1	문(Door) 및 그 개폐장치 의 상태	각부의 손상, 유실이 없어야 하며, 문을 원활하게 개·폐할 수 있고 또한 빗장을 할 수 있을 것.
2	측벽(Side Panel), 단부벽((Front Panel) 및 지붕판(Roof Panel)의 상태	파손 및 심하게 들어가거나 부풀은 곳이 없어야 하며, 현저한 부식이 없을 것. 예를 들면, ① 파공이 있으면 모두 불합격 요철이 다른 부위의 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고 파공에 이르지 않았으면 합격 ② 부식부위 강판에 대해서 테스트망치로 두드려 녹청이 떨어지는 것은 불합격 ③ 리벳(Rivet)의 손상이나 헐거움이 없을 것.
3	바닥골재(Cross Member)의 상태	바닥골재(Cross Member)에 현저한 변형, 균열 및 부식이 없을 것. 또한 힘으로 인하여 하부에 두드러진 돌출이 없을 것. 예를 들면, ① 바닥골재(Cross Member)의 구부러짐이 30mm 이상이면 불합격 ② 바닥골재(Cross Member)의 균열은 크기에 관계없이 불합격 ③ 마루판(Floor)이 태핑스크류(Tapping Screw)가 탈락될 정도의 손상이 있으면 불합격 ④ 하부모서리끼움쇠(Corner Fitting)의 밑면보다 더 돌출한 변형이 있으면 불합격 ⑤ 부식은 특히 재료의 규정치수에 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료의 중요한 부위에서 단면전체의 관두께가 본래의 치수보다 10%이상 감소한 경우는 불합격

순번	점 검 항 목	판 정 기 준
4	포오크포켓(Fork Pocket) 및 터널리세스(Tunnel Recess)의 상태	두드러진 손상 및 부식이 없을 것. 예를 들면, ① 절손, 파공 및 용접부의 균열이 있으면 불합격 ② 포오크포켓플레이트(Fork Pocket Plate)의 균열 및 마루판에서의 이탈이 있으면 불합격 ③ 부식은 특히 재료의 규정치수에 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료의 중요한 부위에서 단면전체의 판두께가 본래의 치수보다 10%이상 감소한 경우는 불합격
5	모서리끼움쇠(Corner Fitting)의 상태	균열, 현저한 변형 및 부식이 없을 것.
6	모서리기둥(Corner Post)의 상태	균열, 현저한 요철, 용접부의 균열 및 두드러진 부식이 없을 것. 예를 들면, ① 깊이 20mm이상 오목하게 들어간 곳이 있으면 불합격 ② 바깥치수를 초과하는 구부러짐이 있으면 불합격 ③ 균열은 크기에 관계없이 불합격 ④ 상, 하부 레일, 앞뿔골재 및 앞뿔골재로부터 이탈이 발생하면 불합격 ⑤ 부식은 특히 재료의 규정치수에 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료의 중요한 부위에서 단면전체의 판두께가 본래의 치수보다 10%이상 감소한 경우는 불합격
7	상부레일(Top Side Rail)의 상태	파손, 균열, 부식등의 손상 및 현저한 변형이 없을 것. 예를 들면, ① 모서리기둥과의 연결부에 있어서 20mm 이상의 변형은 불합격 ② 파손 및 균열이 있으면 불합격. 다만, 주위의 가장자리에 적은 손상은 예외로 함.

순번	점 검 항 목	관 정 기 준
		③ 부식은 특히 재료의 규정치수에 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료의 중요한 부위에서 단면전체의 판두께가 본래의 치수보다 10%이상 감소한 경우는 불합격
8	하부레일(Bottom Side Rail)의 상태	손상, 균열, 부식등의 손상 및 현저한 변형이 없을 것. 예를 들면, ① 바닥골재와의 연결부에 있어서 20mm이상의 변형은 불합격 ② 파손 및 균열이 있으면 불합격. 다만, 주위의 가장자리에 적은 손상은 예외로 함. ③ 부식은 특히 재료의 규정치수에 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료의 중요한 부위에서 단면전체의 판두께가 본래의 치수보다 10%이상 감소한 경우는 불합격
9	앞윗골재(Top End Rail) 및 앞밑골재(Bottom End Rail)의 상태	파손, 균열, 부식등의 손상 및 현저한 변형이 없을 것. 예를 들면, ① 20mm이상 국부적으로 들어간 변형이 있으면 불합격 ② 파손 및 균열이 있으면 크기에 관계없이 불합격 ③ 부식은 특히 재료의 규정치수에 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료의 중요한 부위에서 단면전체의 판두께가 본래의 치수보다 10%이상 감소한 경우는 불합격
10	문윗골재(Door Header) 및 문턱(Door Sill)의 상태	파손, 균열, 부식등의 손상 및 현저한 변형이 없을 것. 예를 들면, ① 20mm이상 국부적으로 들어간 변형이 있으면 불합격 ② 파손 및 균열이 있으면 크기에 관계없이 불합격 ③ 부식은 특히 재료의 규정치수에 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료의 중요한 부위에서 단면전체의 판두께가 본래의 치수보다 10%이상 감소한 경우는 불합격

순번	점 검 항 목	관 정 기 준
11	지붕받침대(Roof Bow)의 상태(있는 경우)	현저한 변형, 유실 및 상부레일(Top Side Rail)로부터 이탈이 없을 것. 예를 들면, 30mm 이상의 변형에 의한 손상은 불합격
12	마루(Floor)의 상태	마루판의 손상 및 태핑스크류(Tapping Screw)의 탈락이 없을 것. 예를 들면, ① 마루판의 들림이 있으면 불합격 ② 마루판의 두께를 관통하는 쪼개짐, 떨어짐 및 파공이 있으면 불합격 ③ 태핑스크류(Tapping Screw)가 바닥골재(Cross Member) 1개당 1/3개소이상 뜨거나 빠진 것은 불합격
13	기타 재료의 상태	파손 등 이상이 없을 것
14	하부레일(Bottom Side Rail)과 바닥골재(Cross Member)와의 접합부 상태	리벳(Rivet)의 유실, 풀어짐 및 용접부의 균열, 부식이 없을 것. 이종금속간에 있어서는 각 재료에 현저한 부식이 없을 것. 예를 들면, ① 티 클립(T Clip)과 접합리벳(Rivet)의 유실은 하나만 있어도 불합격 ② 연결부에 부식으로 인한 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합격
15	하부레일(Bottom Side Rail)과 모서리기둥(Corner Post) 또는 측벽(Side Panel)과의 접합부 상태	리벳(Rivet)의 유실, 풀어짐 및 용접부의 균열, 부식이 없을 것. 이종금속간에 있어서는 각 재료에 현저한 부식이 없을 것. 예를 들면, ① 하부레일과 모서리기둥과의 접합리벳의 유실은 하나만 있어도 불합격 ② 연결부에 부식으로 인한 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합격
16	상부레일(Top Side Rail)과 모서리기둥(Corner Post) 또는 측벽(Side Panel)과의 접합부 상태	리벳(Rivet)의 유실, 풀어짐 및 용접부의 균열, 부식이 없을 것. 이종금속간에 있어서는 각 재료에 현저한 부식이 없을 것.

순번	점검항목	판정기준
		예를 들면, ① 상부레일과 모서리기둥과의 접합리벳의 유실은 하나만 있어도 불합격 ② 연결부에 부식으로 인한 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합격
17	앞끝골재(End Rail)와 모서리기둥(Corner Post) 또는 단부벽(Front Panel)과의 접합부 상태	리벳(Rivet)의 유실, 풀어짐 및 용접부의 균열, 부식이 없을 것. 이중금속간에 있어서는 각 재료에 현저한 부식이 없을 것. 예를 들면, ① 앞끝골재와 모서리기둥과의 접합리벳의 유실은 하나만 있어도 불합격 ② 연결부에 부식으로 인한 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합격
18	상부레일(Top Side Rail)과 지붕판(Roof Panel)과의 접합부 상태	리벳(Rivet)의 유실, 풀어짐 및 용접부의 균열, 부식이 없을 것. 이중금속간에 있어서는 각 재료에 현저한 부식이 없을 것. 예를 들면, ① 접합리벳(Rivet)의 유실은 연속하여 3개이상, 전체 6개이상이면 불합격 ② 연결부에 부식으로 인한 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합격
19	수리부위의 확인	수리공사 결과는 양호하여야 하며 수리부위는 원상 또는 이와 동등한 상태로 복구될 것. 예를 들면, ① 상부레일(Top Side Rail)/하부레일(Bottom Side Rail)/끝골재(End Rail)의 보강판(Patch)에 대하여 가. 보강판의 재질 및 판두께가 적절할 것. 나. 리벳(Rivet)의 재질 및 치수가 적절할 것. ② 모서리기둥(Corner Post)의 수리에 있어서 가. 겹댐(Doubling)이 완전하고, 손상 부위를 충분히 카버하고 있을 것.

순번	점검항목	판정기준
		나. 모서리기둥(Corner Post)의 모서리(Corner)부에 상하방향의 용접을 하지 않았을 것. ③ 재료의 교체에 대하여 가. 본래의 재료 또는 강도, 재질등이 그와 동등 이상의 것일 것. 나. 교체공사방법이 적절할 것.
20	안전승인판(CSC Plate)의 확인	① 안전승인판이 확실하게 부착되어 있고 증인 및 각인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을 것. ② 정기점검방법으로 보수점검하는 경우 차기 보수점검일이 데칼 또는 각인의 방법으로 명확히 표시될 것 ③ 계속점검방법으로 보수점검을 하는 경우 계속 점검표시가 명확히 나타나 있을 것.
21	기타 표시의 확인	① 자체중량 및 최대총중량의 표시가 명확히 나타나 있을 것. ② 포오크포켓(Fork Pocket)이 2중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사용표시가 명확할 것.